

#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-61호

## 행정처분 사전통지

「건설기술진흥법」(구 건설기술관리법)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5일
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### 1. 대상

성명	소재지	처분하고자 하는 사항
김○수	경기도 의정부시 버들로 47번길 이하 생략	업무정지 6개월 (근무경력 거짓신고)
이○경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802번길 이하 생략	업무정지 12개월 (건설기술경력증 대여)

### 2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

성명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근거법령
김○수	<b>근무경력 거짓신고 혐의</b> - 가능동715-2하얏트빌리지도시형생활주택/오피스텔 신축공사(2022.6.4.~2023.12.4.근무중)	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[별표1]
이○경	<b>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</b> - (유)성림건설(2015.9.15.~2020.8.9.) - (유)성신종합건설(2020.8.10.~2021.10.1.)	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[별표1]

### 3. 의견제출

- 제출기한 : 2024. 4. 25.(목)
- 제출처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 
연락처 : 02-2110-6730 / 팩스 : 02-2110-0682 / 전자우편 : jmy8768@korea.kr
- 제출방법 :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(의견제출서)

### 4. 안내사항

-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(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)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-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·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(02-2110-673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